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#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1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5일

3. 제안이유

가.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,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이용(입실)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애완동물 등 입장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객실 이용(입실)시간 조정(14시→15시) (안 제7조)

나. 애완동물 등 입장제한 예외규정 개선 (안 제8조)

다. 관리자 예약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11조의2)

라. 예약사항의 매매, 교환·양도 금지 조항 신설 (안 제11조의3)

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 (안 제9조, 제13조)

## 5. 검토내용

- 본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휴양림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안 제7조는 최근 5년 대비 이용객 대폭 증가에 따라 입실시간을 현행 14시에서 15시로 조정하여 충분한 객실정비 시간 확보를 통해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실시간을 조정함.
  - [참고] 도내에 위치한 21개소 자연휴양림 중 입실시간이 15시인 곳은 14개소(67%)
- 안 제8조는 장애인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서 규정을 개정함.
- 안 제11조의2는 관리자가 시설물을 예약하는 경우 권한의 오남용, 부정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.
  - [참고] 감사원 지적사항 : 공립자연휴양림 예약담당자가 숲나들e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정예약을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 등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, 관리자 예약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승인절차를 받게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
- 안 제11조의3은 예약사항의 매매·교환 등의 금지 사항을 신설하여 투명한 예약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.
-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2. 12. 6.~'22. 12. 26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## 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객들의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,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